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 개선방안 등 정책토론회

- ▶ 일시 21.12.1.(수) 14:00~15:30
- ▶ 장소 부산인권교육센터 8층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 개선방안 등 정책토론회

- ▶ 일시 21.12.1.(수) 14:00~15:30
- ▶ 장소 부산인권교육센터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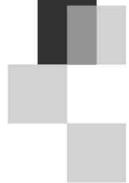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05	❖ 토론회 개최 및 인사말
	좌장 :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05~14:25 (20분)	[발제 1]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부산) -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14:25~14:45 (20분)	[발제 2]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경남) -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14:45~15:05 (20분)	[발제 3]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울산) - 주우민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15:05~15:20 (15분)	[토론]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30 (1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CONTENTS

01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부산) 1
 _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02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경남) 21
 _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03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울산) 41
 _ 주우민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토론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57
 _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부산)

_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부산시 인권보장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의 내용과 과제

(장애인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박 용 민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1. 들어가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부산광역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인권 기본계획 중, 장애인 부문 과제는 10가지가 제시되어 있음.

한편,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2021년에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함. 본래 이 글의 목적은 부산시 인권정책과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비교 대조하며, 2021년 기준 실제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시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에 지난 2020년 12월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 발간한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안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예산 반영을 살펴보고자 함. 다만,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으나, 실제 기본계획을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루고 있음. 이에, 부산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차적으로 대강 분류한 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보장에 관한 항목을 분류하여 해당 예산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2. 부산시 장애인 인구 현황(21년 6월 기준)

부산시는 전체 인구는 3,404,709명이고, 장애인 인구는 176,426명으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장애인 인구가 2,633천여명으로서 전국 장애인 인구 대비 약 6.7%가 거주하고 있음.

장애 유형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유형 분포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176,426	103,866	72,560	67,242	40,668	26,574	109,184	63,198	45,986	100
지체	77,767	46,184	31,583	15,855	10,743	5,112	61,912	35,441	26,471	44.1
시각	17,939	10,600	7,339	3,324	1,689	1,635	14,614	8,911	5,704	10.2
청각	24,906	13,643	11,263	5,368	2,935	2,433	19,538	10,708	8,830	14.1
언어	1,532	1,083	449	795	555	240	737	528	209	0.9
지적	12,284	7,458	4,826	12,284	7,458	4,826	0	0	0	7.0
뇌병변	19,555	11,497	8,058	11,548	6,501	5,047	8,007	4,996	3,011	11.2
자폐성	2,150	1,781	369	2,150	1,781	369	0	0	0	1.2
정신	8,208	4,227	3,981	8,208	4,227	3,981	0	0	0	4.7
신장	7,889	4,631	3,258	5,896	3,517	2,379	1,993	1,114	879	4.5
호흡기	974	712	262	941	696	245	33	16	17	0.5
간	870	608	262	75	51	24	795	557	238	0.5
안면	232	140	92	115	74	41	117	66	51	0.1
장,요루	1,110	682	428	118	67	51	992	615	377	0.7
뇌전증	547	312	235	162	103	59	385	209	176	0.3

부산시 등록 장애인 중, 지체 장애가 77,767명으로 장애 유형 가운데 절반 조금 미치지 못하는 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청각 장애'가 24,906명으로 약 14.1%, '뇌병변장애'가 19,555명으로 약 11.2% '시각장애'가 17,939명으로 약 10.2%를 차지하고 있음.

21년 기준, 남성장애인이 59%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41%이며, 자폐성장애에서 남성(1,781명)이 여성(369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호흡기 및 언어, 간장애 등의 순서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부산의 장애인 인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약 1.5% 증가한 상황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정신장애 영역인 지적(32.8%)과 자폐성 장애(89.2%)의 증가율이 높으며, 청각(55.9%)과 언어(42.1%) 등의 감각장애와 심장(68.4%)과 신장(57.4%), 간(66.2%) 장애로서 (부산복지개발원, 2021년) 질환과 연관한 장애 증가율이 높음.

장애등급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1~3급인 심한 장애는 대체로 감소추세이며 4~6급인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증가추세로 나타남. 2021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면 부산의 '심한 장애' 인구는 38.1%(67,242명)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 인구는 61.9%

(109,184명)임. 반면 2010년의 경우, 전체장애인 인구 172,765명 중, ‘심한 장애’ (1~3급) 인구는 71,333명으로 41.3%인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 인구는 101,432명으로 58.7%임.

3. 제2차 (2020~2024)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5가지 추진목표와 100가지의 정책과제를 마련.

장애인 분야는 100가지의 정책 과제 중, 총 10가지가 제시되었음. 우선, 인권 정책 핵심 과제 10개 과제 중, “거주시설 장애인 등 탈시설 자립지원 단계적 추진”은 장애인 분야에서도 정책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음.

다음으로 인권 정책 주요 과제 26가지 중, “학대피해 장애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두리발 확대 운영” 3가지는 주요 과제로서 제시되었음.

마지막으로 정책 일반 과제는 64개 중, 장애인 정책 일반과제는 6가지였음.

- 1) 장애인의 권익옹호 분야에서는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및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학대 및 운영’ 2가지
- 2)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사소통 보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플랫폼 구축’ 1가지
- 3) 장애인 자립적인 경제생활보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1가지
- 4) 장애인 주간보호활동 지원 강화는, ‘주간보호시설 확충’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2가지 등이었음

2-1. 핵심 과제 : 거주시설 장애인 등 탈시설 자립지원 단계적 추진

- 보건복지부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2019년 10월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동안 약 60억원의 부산시 예산으로 2024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300명 탈시설 자립 지원하기로 함. (매년 60명씩)
- 2020년 11월 부산시장예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자립형 체험홈을 매년 10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2021년 현재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운영하는 체험홈을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 문제는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인 체

힘흠에는 탈시설장애인만이 아니라 학대피해장애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학대피해쉼터도 신설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거주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갈 곳이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됨.

2-2. 중요 과제

① 학대피해 장애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도 없거니와 아동시설 내 장애아동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부재함.
- 이에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조성을 계획을 세워두었으나, 연차별 추진계획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으며 22년 예산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②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첨부한다고 했으나, 정작 부산시에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어떤 자체적인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아서, 2022년 예산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임.

③ 장애인 두리발 확대 운영

- 보행 상 중증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 37천여명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상으로 21년 10월 기준으로 총 181대 운영 중이나 증차 예산은 현재 없는 상황임.

2-3. 일반 과제

①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

- 2020년 추진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후, 제1기 기본계획 시행(21~25)이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지난 2020년 12월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으나, 2021년 11월 현재까지 부산시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경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개최해야 했으나, 2021년에는 11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한 차례도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 및 운영

- 현재 부산시의 경우, 학대피해 여성들만 갈 수 있는 쉼터 1곳이 있음. 그래서 부산시는 21년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여 남성장애인학대피해쉼터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그러나, 21년 11월 현재 남성장애인학대피해쉼터는 없으며, 22년 부산시 복지예산서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설치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음.

③ 장애인 의사소통 플랫폼 구축

-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을 위한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 증재 및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따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음.
- 인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로선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고 장기 검토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왜 기본계획에 삽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함.

④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 부산시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을 위해 현행 법률상 규정된 3.4%를 넘어서 시 조례에 규정된 5% 목표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19년 6월 기준,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4.83%(15,965명 중 771명)이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3.24%(8,450명 중 274명)임.
- 그러나, 적지 않은 숫자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20년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설공단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하고 시 조례에 규정한 5% 이상을 넘기는 곳은 없음.
- 특히,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문화재단, (주)벅스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아시아드cc(주),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0%이나, 이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⑤ 주간보호시설 확충

- 부산시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13,550명이나 21년 기준 현재 이용시설은 63개소에 불과함 (이용 가능 인원 최대 900여명)
- 부산시는 매년 2개씩 센터를 확충하여, 2024년에는 69개소로 확충 목표 수립했으나, 내년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자연 증가분만 반영되어 있음.

⑥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여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서 부산시 차원에서 1억5천만원 별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10명 이상 증원을 목표로 하여 2024년에는 2020년 130명 대비 17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의 경우 3천만원 증액되어, 1억8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음.

4.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안)

지난 20년 12월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 발간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앞서 다루었던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기본계획은 집중 목표를 중심으로 총 3개 영역 13개 과제, 4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음. 일련의 과업 핵심은 장애인의 시민적 참여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 확보의 단계로 구체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부산시 장애인 인권 사업 세부 추진 과제명〉

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 생활 보장	
1-1.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 실천	
1-1-1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인권계획 중요과제
1-1-2	재가 및 시설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조사
1-1-3	범죄 가·피해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1-1-4	발달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1-2. 학대 발생 긴급 조치 및 예방·보호 체계 마련	
1-2-1	학대 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 체계 강화 ⇨ 인권계획 중요과제
1-2-2	학대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운영 ⇨ 인권계획 일반과제
1-3. 장애감수성 및 장애인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1-3-1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3-2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전문화
1-3-3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과 자유 보장	
2-1. 전 생애 단계별 평등한 교육권 보장	
2-1-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적극 지원
2-1-2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 환경 제공
2-1-3	장애 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2-1-4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과 참여의 확대
2-2. 이동과 접근의 장벽 해소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적 권리 보장	
2-2-1	저상버스 도입 확대(20년 28% ⇨ 25년 56%) 2기 100% 도입
2-2-2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제도 강화, 인식개선, 시설 및 구조 개선
2-2-3	장애인 특별 교통 수단 증차 및 확대 운영 ⇨ 인권계획 중요과제
2-2-4	기존 및 신규 공공건축물 무장애 환경 조성
2-2-5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 인권계획 일반과제
2-2-6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사소통기기지원 및 교육
2-2-7	수어교육원 설치 및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 양성

2-3.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2-3-1 주요 관광지별 장애인 접근권 조사 및 관광 약자 향유권 확보
	2-3-2 지역사회 체육 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다양화로 문화예술 향유 실현
	2-3-3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3-4 장애인 e-sports 지원 통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문화개선
2-4. 장애인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보장	
	2-4-1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 운영
	2-4-2 치과적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
	2-4-3 장애인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검진 수검 등 건강보장 확대
	2-4-4 장애 친화병원 운영 모니터링 및 공공 의료서비스 지원 환경 마련
	2-4-5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애 포괄 지원 체계 강화
2-5. 지역사회 거주자의 자유와 권리보장	
	2-5-1 자립 희망장애인 주택확보 및 자립생활 지원 ⇨ 인권계획 핵심과제
	2-5-2 장애인 거주 시설 지역사회 전환(통합)형 모델 개발 및 확대
	2-5-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간지원센터 확대
2-6.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과 경제적 지원 강화	
	2-6-1 빈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2-6-2 취업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6-3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2-6-4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율 6%확대, 2기계획8%⇨ 인권계획일반과제
	2-6-5 장애인 공무원 직무배치 정기조사 및 지원 강화
3.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3-1.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장애 포괄적 인권기반 확립	
	3-1-1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인권계획일반과제
	3-1-2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3-1-3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3-1-4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3-2.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증진	
	3-2-1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전략 마련
	3-2-2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이행 및 점검
	3-2-3 장애인 분리통계 구축
	3-2-4 장애 영향평가 도입 및 부산시 적용

부산시 인권 기본계획으로 제시된 10가지 과제 중,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에는 주간보호센터 및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되어 있음.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에 해당 과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 다소 의외임.

그럼에도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은 아직까지 부산시의 계획은 마련되진 못했지만,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든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인권 및 복지 지원 정책을 상당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음.

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 생활보장

부산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아동 보호지원 체계 마련과 장애 인권교육 인프라 설치 등 장애인 인권 옹호의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으나, 22년 시의회에 제출된 장애인 복지예산안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실행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음. 요컨대,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항목이나, 부산시 2022년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장애인 인권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음.

① 부산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인권센터 역할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 기본계획(안)에 따르자면 2022년부터 바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시는 별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②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 연도별로 인권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례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제시되어 있으나, 거주시설 조사도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시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는 실태조사 계획이나 이와 연관한 2022년 예산도 따로 없음.

③ 장애인 범죄 가해/피해장애인 증가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사후지원 체계마련

- 현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지회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4월,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음.
-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임.
-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에서 별도 예산 마련으로 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언급했듯이 2022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④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시행 및 지원체계 마련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접수 사건 중, 경제적인 학대 피해 관련하여, 장애인의 수급비 횡령이나 사기 사건이 적지 않음. 이런 현실 때문에 2021년 올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경남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1인 발달장애인 가구 현황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행하지 못함.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급여 수급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1인 발달장애인 가구의 현황도 살피면서 지역사회 학대피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이런 실태조사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없음.

⑤ 학대피해아동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추가

- 부산시 인권기본계획에도 중요과제와 일반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장애인 기본계획에도 제시되고 있으나, 언급했듯이 부산시에서는 여전히 계획으로만 남아 있음.

⑥ 장애 감수성 및 장애 인식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장애인 인권센터는 인권보장 교육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장애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전혀 진행되지 못함.

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지난 202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전국 지자체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조사 수준에 따르면, 부산시는 교육 영역에서는 평균 72.77점에 미치지 못하는 68.09였으며, 장애인의 평등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복지분야인 이동권, 문화예술권, 건강권, 노동권의 경우 평균점인 48.54점에 마찬가지로 미치지 못하는 45.57점이었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세 가지 목표 중, 가장 많은 28가지의 세부 사업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21년 장애인 복지예산과 비교해볼 때, 2022년의 장애인 복지예산(안)을 봐도, 해당 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예산을 반영한 것이 전혀 없음. 그런 점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음.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 정리하는 것에서 서술하고자 함.

① 생애 단계별 교육권 보장

-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광역지원 체제 개편 및 구,군 권역별 매년 2개소씩 확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지원 관련 제정 및 장애학생교육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장래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등과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확대.

- ② 이동과 접근의 장벽해소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적 권리 보장
 -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23.4%인데 부산은 22.1%로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고려해서 2025년까지 매년 6~8%의 도입 확대 운영하고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저상버스 내 장애인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 설치.
 - 두리발의 경우, 21년 기준 181대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40대 이상의 증차
 - 기존 및 신규 공공건축물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BF인증 대상 시설 확대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 수어교육원 설치 및 전문분야 수어 통역사 매년 50명씩 양성

- ③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 주요 관광지별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개선
 -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다양화를 위한 여가 문화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운영
 - 장애인 e-sports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참여 환경 마련 및 확대

- ④ 장애인 건강한 삶과 생활 보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 장애인 치과병원 설치 및 지역 내 건강 주치의 지정 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홍보 및 의료기관 추가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 매년 5% 확대를 위한 홍보
 -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 수립 TF 구성하여 재난과 안전에 대한 행동 매뉴얼 개발 및 유형별 매뉴얼 보급과 안전교육 실시

- ⑤ 지역사회 거주자의 자유와 권리보장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희망 장애인 지원주택 확보를 위해 협력기관 연계하여 연 60개의 지원주택을 확보해나가고,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대상 지원주거서비스제공.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통합)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이후 매년 1개 기관씩 확대해나감.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하여 매년 1개소씩 개소하여 운영. 과도기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⑥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과 경제적 지원 강화
 - 부산형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검토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하고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검토.

- 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하여 취업 및 취업 희망 장애인 대상 상담 강화.
- 부산시 공공형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하여 공공형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6%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매년 꾸준히 확대시켜서 2025년까지 장애인공무원 비율을 6%까지 달성.
-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연간 계획 수립 실시.

3. 참여와 적극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 보장

1번과 2번과 달리, 3번 목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다시 말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들임.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여 1년 2회 개최해야 하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마저도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태도를 추정할 수 있음.

- 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장애 포괄적 인권기반 확립
 -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내용 정책 반영
 - 관련 조례재개정을 통해 부산시 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하여, 여성, 아동 노령, 소수 장애 대상별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 ②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 증진
 - 2023년 세계장애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표준협력을 위한 분야 선정과 국내외 교류 및 장애인 포괄 국제협력 기준 마련.
 - 장애인 인권보장 연차별 평가 및 시행계획 마련.
 - 장애분리통계 구축 방안 연구 수행 이후, 자료수집과 구축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 인권영향평가 및 장애영향평가 구분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영향 평가 실시 (24년부터)

4. 부산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2021년 부산시 총예산은 13조3천10억원이며, 그 중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212억원이며, 두리발 및 저상버스 관련 교통과 예산이 245억원,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 쪽 예산이

110억, 장애인체육지원 예산이 83억원, 장애인 건강(지역장애인의료센터 및 구강진료비지원 등) 예산이 약 16억원으로서 전체 4,666억원으로서 약 3.51%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 분야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서 1,500억원 (32.8%)이며, 다음은 생계급여로서 1,222억원(26.2%)임. (활동보조 지원예산 1,500억원 중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약 85억원 정도임) 그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여 563억원(12.1%)이며,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등 노동 부문이 384억원(8.2%)이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정신재활시설 포함하여 382억원(8.1%), 이동권 부문이 254억원(5.5%), 발달장애인지원 부문이 139억원(3%), 장애인 체육이 89억원(1.9%), 장애인 건강이 58억원(1.2%)으로 뒤따르고 있음. 그 외, 나머지 부문은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함

〈2021년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범주 및 금액〉

부문	내용	금액(백만원)	비율(%)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그룹홈,단기,정신)지원	56,361	12.08
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센터, 정신 등)지원	37,614	8.06
생계	장애아동 양육지원	11,468	26.20
	장애인연금(수당)지급	110,789	
건강	장애인 의료비, 시설, 치과, 보건의료 지원	5,831	1.25
체육	장애인 체육 지원, 스포츠 센터 운영	8,943	1.92
노동	장애인 일자리 및 센터지원	24,229	8.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생산품판매시설)지원	14,183	
인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32	0.08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45	
자립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탈시설센터)	320	32.80
	자립생활센터 지원	2,741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150,084	
이동권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특수차량 등 지원	25,471	5.46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바우처, 방과후, 발달센터 등)지원	13,976	2.99
단체/ 기타	장애인 단체 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포함)	3,095	0.93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1,000	
	행정 운영 경비 등	243	
합계		466,725	100

그런데 장애인복지예산의 총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권’ 분야를 꼽아 권익옹호기관 운영이나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을 제시하긴 했으나, 사실 이동권 분야도 장애인 복지 영역이지만, 실제로 장애인 인권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이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탈시설 관련 대목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앞서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드러나듯이 부산시는 올해 수립 했어야 할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게다가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 장애인복지예산을 볼 때,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은 찾기 어려움. 그리하여 언급했듯이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기본 바탕으로 했던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구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해당 표는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정문 관장이 구성했던 것을 참고함)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 관련 예산:UN 장애인권리협약 구분을 기준으로〉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총 계	466,725,031	100%
1	인식제고(제8조)	소 계	316,300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 대회- • 장애인행복나눔 페스티벌지원- • 등록장애인 각종행사지원- •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개최지원-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등 교육사업- •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인 한마음행사 및 가요제지원- • 흰지팡이의 날 행사- • 농아인의날 행사-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00 5,100 6,500 150,000 10,000 50,000 12,550 8,000 5,000 30,000 	• 장애인복지과(이하)
2	접근성 및 정보접근(제9, 21조)	소 계	2,248,588	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전화기보급사업- • 수어통역센터 운영- • 점자도서관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750 1,272,191 217,947 715,700 30,000 	• 장애인복지과(이하)
3	사법적 평등 및 법적절차의 접근(제12~13조)	소 계	103,750	0.0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103,750	• 장애인복지과(이하)
4	안전권(제11, 14조)	-	-	-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5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 (제15~16조)	소 계	441,908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24,000 40,000 232,508 145,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6	생명 및 생존권(제10, 28조)	소 계	116,257,791	2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92,152,991 20,317,153 3,540,543 247,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7	주거권 (제18, 19조)	소 계	55,285,574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포함) 운영 및 인력지원- 	55,285,5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책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8	자립생활 및 사회 통합(제19조)	소 계	163,245,078	34.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 시설운영 자립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운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운영- •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 장애인 전용전화상담- • 산재장애인 종합상담사업- •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140,000 132,000 2,562,528 180,000 516,000 9,329,000 150,085,471 112,942 43,137 54,000 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9	이동권(제20조)	소 계	26,606,275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운영- • 저상버스 운영- • 장애인 특별운송지원비- • 보조기기교부- •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광역지원사업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5,500,000 9,016,000 245,400 120,789 494,000 328,566 9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운영과 • 택시운수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10	교육권(제24조)	소 계	237,000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수어 및 한글교육사업- • 장애인정보화교육- 	174,000 13,000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이하)
11	노동권(제27조)	소 계	39,183,053	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 장애인 일자리(일반, 시간, 복지) 지원- • 장애인채용박람회-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장애인턴 및 현장매니저사업-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장애인지역법인 작업장 지원- 	181,545 359,500 14,306,143 1,314,348 20,944,112 30,000 605,013 616,000 393,392 43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이하)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12	건강권(제25조)	소 계	11,801,307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치과비지원및구강진료센터운영- • 장애인 치료지원센터운영- • 장애인건강검진운영지원- •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 • 언어발달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원-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4,000 734,000 200,000 60,000 45,000 9,251,064 260,569 361,098 85,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책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13	참정권(제29조)	-	-	-
14	여가생활 및 문화, 체육 참여권(제30조)	소 계	9,083,548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활성화- • 장애인복지문화사업- • 곰두리스포츠센터- • 장애인복지아카데미- • 장애인운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8,349,508 16,000 594,040 24,000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이하)
15	가정 및 가족(제23조)	소 계	11,824,189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주말주간 일시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결혼상담지원 및 합동결혼식- • 산재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274 73,000 2,418,021 160,000 42,857 91,429 51,000 8,595,608 150,000 70,000 5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16	장애여성(제6조)	소 계	140,714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파견사업- • 여성장애인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2,464 40,000 4,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17	장애아동(제7조)	소 계	3,591,429	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지원- • 장애아동 일시보호시설- • 뇌병변아동 보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71,429 70,000 30,000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18	기타	소 계	26,358,527	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회관 운영- •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 • 장애인이동목욕차량운영지원- • 장애인복지관(정신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카드등기배송- • 일반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0 100,000 430,000 25,434,893 119,184 124,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권리 기준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 예산을 구분해보긴 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만을 두고 보면, 인권적으로 의미있는 사업들도 없진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부산시 차원에서 실시하는 유의미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은 찾기 어려움. 이는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에 매칭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음을 의미함. 예컨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센터의 경우,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30,000천원의 체험관 운영지원에 머물고 있음. 아쉬운 점은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가 제법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부산시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재개정 날짜	조례명
21.11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1.06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1.04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10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19.10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19.0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19.0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8.11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18.10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18.08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18.05	부산광역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5.1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13.06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12.1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조례
11.07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부산시는 모범에 근거하든, 자체 필요에 의해서든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교육과 건강권, 교육, 심지어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장애인 조례가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유보형 서술인지라 결국에는 부산시 집행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갖고 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심지어는 조례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결국 부산시가 장애인 인권을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미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산시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산복지개발원이 수립한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무엇보다 부산시의 장애인 인권을 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이행 가능한 시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제 부산복지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실태 조사 및 계획을 세우라는 제언이 적잖이 들어가 있음. 이는 단기적인 사업 시행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접근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장애인 문제에 천착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다룬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6. 나가면서

지금까지 부산시 인권기본계획과 장애인 인권보장계획(안),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음.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경우, 아직까지 장애인 인권보장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지 못했음.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던 장애인복지예산 분석도 기존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정리한 수준에서 다르지 않은 정도로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음. 추후, 부산시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해당 계획에 따라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이런 자리를 통해 경남과 울산, 그리고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 현재태를 확인하고, 추후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가를 서로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함.

»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2021), 「2021년도 예산서」,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2021), 장애인 관련 의안 정보
- 부산복지개발원, (2020),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부산복지개발원.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0~2024년)」,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부산광역시.

02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경남)

_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의 내용과 과제

송 정 문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 들어가며

그 동안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호 및 보장은 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차별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인권행정의 전문화 및 지역단위 인권보장체제 확대, 시민들의 사회권적 요구 등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공간이 지역사회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실현되도록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태동·김광병, 2019; 배유진·김광병, 2017; 이현우·송상훈·이미애, 2015; 정영선, 2020).

우리나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제도 수용에 대한 출발점은 2006년 경상남도 진주시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인권기본조례 제정 운동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김중섭, 201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조례(이하. 경남인권조례)」는 2010년 3월 25일에 제정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발 빠르게 인권조례가 제정된 도시이다. 그리고 2013년 개정을 통해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6가지로 명시¹⁾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만 신속히 제정되었을 뿐, 인권조례 제정 7년 뒤인 2021년에 와서야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남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분야별 인권조례 중 장애인에 관한 인권보장 조례로서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경남장애인인권조례)」가 2019년 6월 7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동법 제 5조에 명시된 기본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
-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2. 인권 의식의 함양 및 실천을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3.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
 4.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방안
 5.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6. 그밖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경남인권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인권 약자2)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와 연 관되는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경남장애인권계획)」은 이제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초에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조직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계획 및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김남진, 2019; 김태동·김광병, 2019; 정영선, 2020).

따라서 경상남도도 부산시, 울산시와 비교·논의할 만한 장애인권계획이 부재한 바, 경남인권조례 와 경남장애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인권기본계획 및 2021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함께 살 펴봄으로써, 경남장애인권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경상남도 장애인 인구현황

경상남도 통계정보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88,749명이며, 장애여성은 79,873명, 장애남성은 108,876명이다. 같은 시기, 경상남도 총 인구 수가 3,325,840명이므로, 전 체 도민 중 약 5.7%가 등록 장애인 인구임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수가 90,912명으로 가장 많으며, 안면장애인 수는 201명으로 가 장 적다. 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수는 17,824명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21년 11월 21일 검색).

〈표 13〉 경상남도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2021년 6월 현재)

(단위: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계	90,912	17,578	16,985	26,114	1,510
남성	53,351	9,783	10,082	13,254	1,066
여성	37,561	7,795	6,903	12,860	444
구분	발달(지적장애)	발달(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계	15,744	2,080	7,934	6,415	262
남성	9,423	1,709	4,187	3,758	161
여성	6,321	371	3,747	2,657	101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계	773	819	201	1,021	401
남성	536	586	120	636	224
여성	237	233	81	385	177

2) 제2조(정의) 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 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별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창원시 장애인 수가 49,99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령군 장애인 수는 2,910명으로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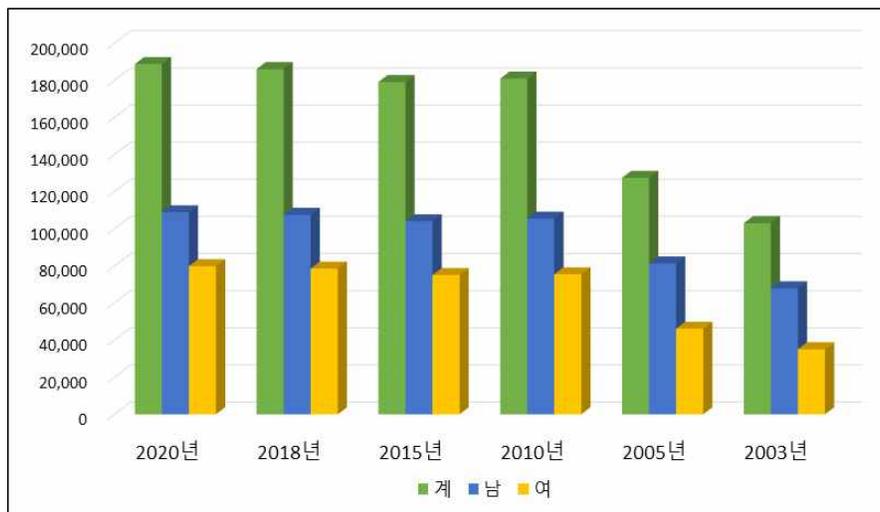
그리고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장애여성보다는 장애남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인구 총 현황에서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진주시와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여성인구 수가 남성인구 수보다 많은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1년 11월 21일 검색). 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직군에서 일하는 성별의 차이 및 장애여성의 미등록 비율이 높은 이유 때문일 수 있겠으나, 향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4〉 경상남도 18개 시군별 등록 장애인 현황 (2021년 6월 현재)

(단위: 명)

구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
계	49,992	24,825	18,110	16,415	11,161	9,005
남성	29,778	15,109	10,440	9,803	6,913	4,949
여성	20,214	9,716	7,670	6,612	4,248	4,056
구분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계	7,630	7,375	5,460	5,121	5,052	4,824
남성	4,332	4,187	2,946	2,874	2,711	2,455
여성	3,298	3,188	2,514	2,247	2,341	2,369
구분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계	4,682	4,492	4,344	3,785	3,566	2,910
남성	2,547	2,369	2,248	1,905	1,778	1,532
여성	2,135	2,123	2,096	1,880	1,788	1,378

장애범주가 15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던 2003년부터의 경상남도 등록장애인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2010년까지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이후부터 2020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1년 11월 21일 검색).



3. 경상남도 시군별 장애인권조례 제정 현황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경남장애인권조례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제4호(이행사항 모니터링)에 의하여 18개 시군별 장애인권조례 제정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 11월 현재 장애인권조례가 제정된 경남 도내 시군은 10개 시군으로서, 아직도 장애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8곳이나 되었다.

〈표 15〉 경상남도 시군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현황

No	지역	제정일	구분	지역	제정일
1	거창군	2013. 09. 25	6	거제시	2020. 06. 25
2	양산시	2019. 05. 02	7	김해시	2020. 10. 08
3	통영시	2019. 07. 01	8	진주시	2020. 12. 23
4	의령군	2019. 12. 24	9	고성군	2020. 12. 30
5	창원시	2019. 12. 31	10	밀양시	2021. 02. 18

그마저도 장애인권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수립 주기조차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만 있고 시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규정하지 않은 시군이 다수여서 개선이 요구된다.

〈표 16〉 경상남도 시군별 장애인권조례의 “계획수립” 규정

No	지역	기본계획 수립주기	시행계획 수립주기	기본계획 수립 내용	시행계획에서의 추가내용
1	거창	5년	×	①기본방향과 추진목표 ②편의제공 위한 세부 시책 ③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④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 ⑤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⑥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없음.
2	양산	5년	매년	①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③정책 및 추진전략 ④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⑤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⑥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⑦(1-⑥과 동일)	없음.
3	통영	×	매년	①(2-①과 동일) ②(2-②와 동일) ③(2-⑤과 동일) ④(1-⑥과 동일)	없음.

No	지역	기본계획 수립주기	시행계획 수립주기	기본계획 수립 내용	시행계획에서의 추가내용
4	의령	×	×	①(2-①과 동일) ②(2-②와 동일) ③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④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⑤(1-④와 동일) ⑥(1-⑥과 동일)	없음.
5	창원	5년	매년	①정책목표와 시책방향 ②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③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④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⑤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⑥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⑦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⑧(1-⑥과 동일)	없음.
6	거제	5년	×	①(1-①과 동일) ②(5-②와 동일) ③(4-④와 동일) ④(2-⑤과 동일) ⑤(1-④와 동일) ⑥(1-⑥과 동일)	없음.
7	김해	5년	매년	①(2-①과 동일) ②(2-②와 동일) ③(4-④와 동일) ④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⑤(1-⑥과 동일)	①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②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세부시책 ③교육계획 ④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8	진주	5년	매년	①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②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추진 사항 ③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④(7-④와 동일) ⑤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⑥(1-⑥과 동일)	①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 ②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③장애인 인권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④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정책 ⑤(7-④와 동일)
9	고성	×	×	①(1-①과 동일) ②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③(4-④와 동일) ④주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⑤(1-④와 동일) ⑥(1-⑥과 동일)	없음.
10	밀양	4년	매년	(5와 동일)	①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②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③(7-③과 동일) ④(7-④와 동일)

4. 경남인권기본계획에서의 장애인 분야 과제

지방정부의 인권기본계획에서는 먼저 지자체의 인권 상황과 인권 관련 제도, 관련 인권계획의 연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목표와 추진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지방정부의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계획의 일환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과제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이현우·송상훈·이미애, 2015).

제1차 경남인권기본계획에는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추진할 내용이 담겨있는데, 먼저 4대 정책목표로서, ▲인권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로서 ① 경상남도 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 ② 도·시군 인권협력체계 구축, ③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경남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 ④ 노인보호시설의 공공성 강화, ⑤ 아동청소년 학대 및 폭력예방, ⑥ 성평등 환경조성, ⑦ 이주민 통번역 지원체계 구축, ⑧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⑨ 학대 및 폭력피해 보호 시설 설치, ⑩ 인권 감수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핵심과제 중에서 인권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영역과 크게 관련이 있는 추진과제는 “경남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이다. 또한 21대 중점전략에서도 장애인분야는 동일하다.



02

인권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여성, 장애인, 노인의 당연한 삶 보장
-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정받는 아동청소년
- 안전하고 차별없는 노동환경 보장

그리고 4대 정책목표 중에 ‘인권정책 강화’의 세부목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부분을 살펴보면,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여성, 장애인, 노인의 당연한 삶 보장,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정받는 아동청소년, ▲안전하고 차별없는 노동환경 보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장애인 분야로 전환해 보면,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장애여성, 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당연한 삶 보장,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정받는 장애아동청소년,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차별없는 노동환경 보장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정책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으로서, 그 사업내용은 ①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② 장애인 차별해소와 권리구제 강화, ③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 보장을 위한 종합적 검토·개선이라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경상남도 장애인 분야 과제

과 제	목 표	사 업 내 용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 장애인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핵심과제) • 장애인 차별해소와 권리구제 강화 • 장애인의 자립 보장을 위한 종합적 검토·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당연한 삶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정받는 장애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있어 안전하고 차별없는 노동환경 보장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진과제가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임에 따라, 그 사업내용은 모두 계획수립에 관련한 것일 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대 정책목표 중 ‘인권환경 조성’의 세부목표로서 “도민의 생활인권 보장”부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학대피해 장애여성아동쉼터 운영(303,000천원)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5.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실사 경남인권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2019년도에 제정된 경남장애인권조례 제5조3)에 따라 경남장애인권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경남인권기본계획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인권정책 강화의 세부목표를 장애인분야 정책의 목표로서 요약해 볼 때,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및 연령·성별·사회분야를 망라한 장애인의 당연한 삶 보장’이 되므로, 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로서의 지원정책이 성별, 생애주기, 장애유형별 인권보장 추진과제로서 수립되는 것을 기대해 볼 따름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목표와 방향만 수립해 놓고 사실상의 사업계획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의 나열 및 예산의 증가도 없는 유명무실한 계획인 경우가 더러 있어왔기에, 제대로 된 계획과 함께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6. 2021년 경상남도 장애인권 관련 예산 현황

경상남도는 아직 경남장애인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2021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2021년도 예산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수립될 경남장애인권계획의 관련 예산이 얼마나 타당하게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원은 길버트, 스펙트, 터렐의 정책분석틀에서 제시한 차원 중 하나로서, 수립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Gilbert, Specht, & Terrell, 1992). 실사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고 관련 사업내용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구성된다 할지라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은 실효성 없는 말장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태동·김광병, 2019).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여 현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2021년도 경남인권기본계획에는 장애인권계획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권영역별로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참조하고자 한다.

- 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홍보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며,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지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총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자 체결된 다자조약이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28호). 제4조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5조는 평등 및 비차별의 규정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의 보장, 차별철폐를 위한 편의제공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약 제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각 영역별로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면, 장애인권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장애인권 보장 영역을 가름해 볼 수 있다. 다만, 제14조(신체의 자유)와 제17조(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22조(사생활의 존중)는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생략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6조~30조)에 따른 장애인권의 영역 및 세부내용

No	조항	영역	세부내용
1	제8조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언론 활동 •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2	제9조, 제21조	접근성 및 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와 수어 등 의사소통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조치와 비용 지원
3	제12조, 제13조	사법적 평등 및 법적 절차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조사 및 이의제기 등의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편의제공
4	제11조, 제14조	안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상황이나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예산
5	제15조, 제16조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대우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
6	제10조, 제28조	생명 및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호 및 적정 수준의 일상생활 및 생활수준 유지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훈련, 상담, 간호 등의 비용 지원
7	제18조, 제19조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주거할 곳의 선택 지원 • 주거공간 내 편의 등 접근성 지원
8	제19조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별 지원 및 활동 지원 • 가정 내 지원서비스
9	제20조	이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관련 보조기기의 지원
10	제24조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제공, • 교재 개발, 교사의 훈련

No	조항	영역	세부내용
11	제27조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등의 노동활동에서의 권리보호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근무환경의 보장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의 지원 •창업 기획의 촉진
12	제25조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장애와 관련한 건강관리 지원 및 적절한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
13	제29조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절차, 시설, 자료의 사용 용이성 보장 •동등한 정치적 참여의 보장
14	제30조	여가생활 및 문화, 체육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장소에 관한 접근 •장애인의 예술능력 계발을 위한 지원,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의 참여 보장,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예산
15	제23조	가정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의 접근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등을 위하여 장애인이 자녀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절차의 접근 보장
16	제6조	장애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동등한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
17	제7조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 •다른 아동과 동등한 인권보장을 위해 특화된 조치
1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17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021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9,464,810,930천원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325,341,610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이 있는 예산은 약 325,102,040천원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애 관련 예산은 장애인복지과에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서 상의 사업명으로서 장애인권 보장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타부서의 장애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통합교육추진단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174,000천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서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147,168천원, ▲창업혁신과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112,500천원, ▲인사과의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 10,000천원, ▲건축추택과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9,710천원, ▲교통정책과의 저상버스 구입과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지원을 포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2,880,311천원⁵⁾, ▲문화예술과의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지원사업 및 점자도서 구입지원과 진

4)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권 보장 관련 예산에서 제외한 예산(총 239,570천원): 장애인복지과 운영비 67,893천원,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 61,677천원, 장애인단체 종합평가 및 컨설팅 지원 80,000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 30,000천원

5) 교통정책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예산은 총 16,091,126천원(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2,465,000천원,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500,000천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1,439,126천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70,000천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1,617,000천원)이지만,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교통약자의 비율은 2020년 말 기준의 경상남도 총 인구 3,340천명 중 1,054천명인 31.6%이며, 교통약자 중 장애인

주장애인문화도서관 조성 200,000천원, ▲체육지원과의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5,444,509천원, ▲가야문화유산과의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 48,300천원, ▲보건행정과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499,400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51,664천원⁶⁾,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80,000천원, ▲여성정책과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50,000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131,954천원, ▲가족지원과의 장애청소년과의 어울마당 8,000천원, ▲산림복지과의 무장애 나눔길 230,000천원, ▲농업기술원 총무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132,908천원이다.

이를 모두 포함한 2021년도 장애인 분야 예산 총액은 335,597,319천원이며, 경상남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5%여서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타부서의 장애인권보장 관련 예산은 모두 합쳐도 약 0.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⁷⁾.

2021년도 경상남도 장애인 분야 예산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6조~30조)에 따라 장애인권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예산이 41.6%로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지원에 속하는 자립생활 예산으로서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볼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 및 생존권’예산이 25.3%로 큰 규모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지원이었다.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예산이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인력지원 예산으로서 협약 제18~19조에서 설명하는 자신이 주거할 곳의 선택이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를 위한 주거 서비스 예산은 사실상 극히 적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영역임에도 사업종류나 규모도 적고, 전체 장애인권 보장 예산 중 0.5% 이하에 해당하는 영역⁸⁾이 ▲접근성 및 정보접근(0.5%),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0.3%), ▲인식제고(0.1%), ▲장애여성(0.1%), ▲사법적 평등 및 법적절차의 접근(0.03%) 영역이었다. 특히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 영역에서 성폭력피해장애인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은 있으나, 학대피해장애인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이 없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관련한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식제고’영역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 행사나 시설종사자 인식제고 비용이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여성’영역은 기술과 직업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며 그 액수가 너무 적어 다양한 사업개발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 ‘사법적 평등 및 법적절차의 접근’영역은 공공후견 비용 지원 외에는 관련한 예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주요 과제도 다루고 있는 사항일 만큼, 사법적 평등은 장애인권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경상남도 예산 속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매우 미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⁶⁾ 은 17.9%로 확인됨(국토교통부, 2021).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예산을 모두 장애인 이동지원 예산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예산 총 16,091,126천원 중 17.9%에 해당하는 2,880,311천원을 장애인 이동지원 예산으로 편성.

⁷⁾ 이 예산과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⁸⁾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명에 따라 일차적인 분류를 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평등 및 참여보장을 고려한 다른 세부적인 예산이 더 있을 수 있음을 밝힘.

⁹⁾ 0.5% 이하인 예산 중에서 교육권 예산은 경남교육청의 운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장애인 통합교육 예산을 합하면 0.5%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생략하였음.

주목할 점은 안전권과 참정권 보장 영역의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마치 이 두 영역의 장애인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것 마냥, 지방정부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물론 예산서에 한한 분석이어서,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관련한 적정한 사업이나 예산이 없다면, 위험상황이나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장애인의 안전 보장 및 지자체 내 이루어지는 참정권의 투표절차, 시설, 자료의 사용 용이성 보장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은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 마련이 시급한 영역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경상남도 장애인권보장 관련 예산(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구분)

(단위: 천원)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총 계	335,597,319	100.0%
1	인식제고(제8조)	소 계	451,300	0.1%
		• 장애청소년과의 어울마당	8,000	• 가족지원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5,000	
		• 영호남 신체장애인 복지증진대회	3,800	
		• 전국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개최	40,000	
		•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회	36,000	
		• 장애인의 날 행사	35,000	
		• 흰지팡이의 날 행사	15,000	
		• 농아인대회	4,000	
		•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20,000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0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9,000	
		• 경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18,500	
		• 장애인 소식지 미디어힐링 발행보급	40,000	
• 장애인 인식개선공익광고 제작방영	12,000			
• 장애인 인권교육 지원사업	200,000			
2	접근성 및 정보접근(제9, 21조)	소 계	1,585,805	0.5%
		•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147,168	• 정보빅데이터담당관 • 가야문화유산과 • 산림녹지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 무장애 공간 조성	48,300	
		• 무장애 나눔길	230,000	
		• 나눔의 전화	5,000	
		• 수어(수화)교육	5,000	
		• 수어통역센터 운영	350,750	
		• 점자도서관 운영	165,000	
		•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	376,200	
		•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41,391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사업	216,996	
3	사법적 평등 및 법 적절차의 접근(제 12~13조)	소 계	102,500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102,500	• 장애인복지과(이하)
4	안전권(제11, 14조)	-	-	-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5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 (제15~16조)	소 계	1,037,817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0,000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40,000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400,000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327,817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00 •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 2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6	생명 및 생존권(제 10, 28조)	소 계	85,019,599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지원 71,340,324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 9,907,000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3,445,081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200,000 •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27,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7	주거권 (제18, 19조)	소 계	45,366,511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9,710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인력지원 45,129,801 • 탈시설 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택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8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제19조)	소 계	139,586,024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24,000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169,730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560,0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운영 16,597,857 • 장애인 활동 지원 121,145,037 • 멘토와 함께 1+1 5,000 •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45,000 • 신장장애인 정보교류사업 9,000 • 척수장애인 일상복귀 지원사업 25,000 •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5,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과
9	이동권(제20조)	소 계	3,089,115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880,311 • 보조기기교부 72,804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3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책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10	교육권(제24조)	소 계	174,000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17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추진단
11	노동권(제27조)	소 계	22,034,363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지원⁹⁾ 272,860 •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 10,000 • 중증장애인 일자리나눔사업 132,90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512,905 • 장애인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 9,000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6,289,290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도 98,000 •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사업 140,000 • 중증장애인 인턴제 340,000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29,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혁신과+장애인 복지과 • 인사과 • 농업기술원 총무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No	과 제	사 업 명	예산	비율 및 부서
12	건강권(제25조)	소 계	11,711,598	3.5%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¹⁰⁾	895,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행정과+장애인복지과 • 보건행정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및 구강진료센터 운영	499,400	
		• 장애인 전용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102,600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2,000,000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	128,957	
		• 기초재활교육 등 재활프로그램	86,000	
		• 언어발달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7,316,278	
		•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96,000	
		• 장애상담 클리닉 운영	22,68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원	527,007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7,000			
13	참정권(제29조)	-	-	-
14	여가생활 및 문화, 체육 참여권(제30조)	소 계	5,669,009	1.7%
		• 진주장애인문화도서관 조성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 • 체육지원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 점자도서 구입 및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지원사업	100,000	
		•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5,444,509	
		• 장애인 야영대회	10,000	
		• 여성장애인 아로마테라피 및 아트 교실	9,000	
		•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 참가	5,500	
•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5,500			
15	가정 및 가족(제23조)	소 계	5,437,206	1.6%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13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과 • 장애인복지과(이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3,47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724,439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978,000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54,643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100,000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66,00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288,700	
		•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00	
16	장애여성(제6조)	소 계	207,996	
		•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및 교육지원	145,996	• 장애인복지과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36,000	
		•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지원	26,000	
17	장애아동(제7조)	소 계	6,792,215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6,605,715	• 장애인복지과
		•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106,500	
		• 장난감도서관 사업 지원	80,000	
18	기타	소 계	7,332,261	
		•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0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	514,800	
		• 장애인단체 지원센터 보조	1,480,100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사업	6,000	
		• 장애인복지관 운영	4,028,821	
		•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시설 종사자수당	1,242,540	

9) 창업혁신과 112,500천원, 장애인복지과 160,360천원

‘기타’ 영역에는 다른 17개 영역에 포함되진 않으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기타 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장애인의 여가 및 자립생활, 가족,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과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 자조단체, 자조센터 지원 사업’ 등은 삶의 전 영역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므로 장애인권 보장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장애인권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 경상남도 인사과 예산 속에 ‘202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예산’이 8,624천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인데,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지방정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8천6백만원 이상 편성해 놓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7. 결론 및 제언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권과 관련된 업무가 인권전담부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 각 부서 모두의 업무라는 점에 관한 인식제고와 함께, 부서별로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실현해 나가는 로드맵이 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현우·송상훈·이미애, 2015). 따라서 인권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배타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권문화를 친화적 문화로 전환하고, 인권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안에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사항과 각 분야별 추진 계획 및 협력체계의 구축, 인권약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 인권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인권기본계획은 단순히 정책과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기별 이행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이행 방법과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다(이현우·송상훈·이미애, 2015).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남도 내에는 장애인권조례가 제정조차 되지 않은 시군이 8곳이나 되며, 경상남도도 아직까지 경남장애인권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제1차 경남인권기본계획(2021~2025년) 내의 추진과제로서 ‘경남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과 ‘학대피해 장애여성아동쉼터 운영’만이 장애인 분야의 계획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0.1%로 너무나 미비한 수준이다. 물론 예산서 상에 드러나는 장애인권 보장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10) 보건행정과 351,664천원, 장애인복지과 544,012천원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예산을 연간 8,624천원이나 편성해 놓은 점을 비롯해, 경남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부터 경상남도가 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만약 지방정부인 경상남도의 인권의식이 그러한 수준이라면, 경남장애인권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열거하는 방식으로서, 사실상의 장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증액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경남장애인권조례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의회 및 도민에게 보고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더욱 염려스럽다.

이에 경남장애인권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1차 인권기본계획의 시행시기 동안 적어도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5% 이상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전반에서의 접근 및 참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이나 복지시설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영역에서의 접근 및 참여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5%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본다. 다만, 경상남도 총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가 5.7%인 점을 감안한 점진적 보장을 고려한 제안으로서, 적어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5%밖에 되지 않는 현 예산편성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6조~30조)에 근거한 장애인권의 영역별로 살펴본 바에 따라 ▲접근성 및 정보접근(0.5%), ▲인권침해 대응 및 피해예방(0.3%), ▲인식제고(0.1%), ▲장애여성(0.1%), ▲사법적 평등 및 법적절차의 접근(0.03%) 영역의 사업규모 및 관련 예산이 0.5% 이하로 매우 적어, 해당 영역에 관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예산 증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권 영역의 예산이 협약 제18~19조에서 설명하는 자신이 주거할 곳의 선택이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대부분이 지역과 분리된 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 및 사회통합에 관한 예산이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협약 제18~19조항의 의미가 이주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그리고 선택권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인의 안전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업개발 및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위험상황이나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장애인의 안전 보장 및 지자체 내 이루어지는 각종 선거 등에서의 투표절차, 시설, 자료의 사용 용이성 보장은 인권의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규모 있는 예산 책정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예산서 상에서 관련 사업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촉구한다.

다섯째, 경상남도 내 기초지자체 중 아직까지 장애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정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명확한 주기를 규정하여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장애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을 제안한다. 각 부서별로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질적 내용과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와 함께, 수립된 장애인권계획이 기간 내에 잘 시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평가할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 장애인권조례 제8조에서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제도’의 역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작되었다. 영향평가의 사전적 개념은 정책이나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나 사업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정영선, 2020). 영향평가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책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정책의 목적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정영선, 2020).

이러한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인 정보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많은 사회영향평가 제도(Social Impact Assessment: SIA)로서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권영향평가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¹¹⁾. 장애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참조할 만하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법령과 제도, 정책 그리고 추진 사업을 시행하기 전 또는 후에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평가, 성별 균형참여 평가 등을 다룬다.

요약하자면, 장애인권 보장이 단순히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법령·제도 및 정책 입안과 집행 등에서의 장애인권 보장 내용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 하루속히 장애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 장애인권 보장을 위하여 여섯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장애인권 보장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의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도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1조의 목적과 같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11) 진주시 조례에서 장애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음.

» 참고문헌

- 경상남도, (2021), “2021년도 예산서”, 경상남도.
- 경상남도, (2021),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 경상남도.
- 김남진, (20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인권법평론』, (23), 57-88.
- 김중섭, 2016, 『인권의 지역화』, 집문당, 173-197.
- 김태동, 김광병, (2019),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10(1), 97-121.
- 배유진, 김광병, (2017),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개선에 관한 연구: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187-215.
- 이현우, 송상훈, 이미애, (2015),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정책연구』, 1-105.
- 정영선, (2020),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3(3), 547-575.
- Gilbert, N., Specht, H., & Terrell, P., (199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UN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9년 1월 9일, 다자조약 제1928호.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1년 10월 31일 검색.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2021년 11월 07일 검색.
- 통계청 <https://stat.kosis.kr>, 2021년 11월 21일 검색.

03

장애인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등(울산)

_ 주우민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에 관한 소고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21년 장애인 복지예산 중심으로

주 우 민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I. 들어가면서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과거의 노예제도나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인 제도, 빠른 산업화 발달로 인한 빈부격차,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등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침해받고 타인에 의해 간섭받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들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조경진, 2014).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떠한 생활을 의미하며 사회적 보장 급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관점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수준이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가지므로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적인 최저 환경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최저 수준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이 배제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경태, 2010). 따라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며, 헌법 제34조 제1항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 원리로서 존엄을 실현하는 법적·사회적 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본권과 인권에 기초한 가치체계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치체계로 이해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권이 지향하는바와 다르지 않다(길수현 2008).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9조에서도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김주연, 2008).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안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II. 정부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접근이 자발적으로 이뤄 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정부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보 전, 인권신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양자 간의 협력 관계(거버너스)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정부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따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정부 외부에서 나타나는 기 업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증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간주한다. (정준금, 2020) 하지만 정부는 공공조직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수선수범해야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야 한다. 정부기관 일지라도 인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들은 기업과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할 것이며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위해 그 중 실행에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 및 사업, 예 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III. 울산광역시 장애인 현황 및 인권의식

2020년 기준 울산광역시 등록장애인은 51,1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23,516 명으로 전체 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인 7,695명, 시각장애인 4,861명, 뇌병변 장애인 4,82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장애인권리협약(2006 년)이 체결되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적 원리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차별금지,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통합, 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기회균등, 접근성, 양성 평등, 장애아동 역량개발을 위한 존중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이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008)이 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과 차별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및 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사업체계가 마련되 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부응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조성제, 2016). 울산광역시의 경우 14개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14개의 대부분의 자치법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로써 타 분야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보다 포괄적인 장애인정책 및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타 분야 및 부서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기반 한 자치법규를 통해 제도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단위:명)

시도	장애 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비율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51,122	30,905	20,217	18,940	11,442	7,498	32,182	19,463	12,719
울산광역시	소계	100.0%	51,122	30,905	20,217	18,940	11,442	7,498	32,182	19,463	12,719
	지체	46.0%	23,516	14,668	8,848	4,273	2,876	1,397	19,243	11,792	7,451
	시각	9.5%	4,861	2,869	1,992	916	439	477	3,945	2,430	1,515
	청각	15.1%	7,695	4,435	3,260	2,086	1,258	828	5,609	3,177	2,432
	언어	0.8%	429	296	133	214	152	62	215	144	71
	지적	8.7%	4,430	2,687	1,743	4,430	2,687	1,743	0	0	0
	뇌병변	9.4%	4,829	2,737	2,092	2,992	1,632	1,360	1,837	1,105	732
	자폐성	1.3%	670	560	110	670	560	110	0	0	0
	정신	2.8%	1,452	708	744	1,452	708	744	0	0	0
	신장	4.0%	2,065	1,166	899	1,405	795	610	660	371	289
	심장	0.3%	168	98	70	149	87	62	19	11	8
	호흡기	0.5%	265	196	69	255	188	67	10	8	2
	간	0.7%	347	248	99	10	7	3	337	241	96
	안면	0.1%	70	47	23	37	27	10	33	20	13
	장루·요루	0.4%	219	134	85	24	12	12	195	122	73
뇌전증	0.2%	106	56	50	27	14	13	79	42	37	

울산광역시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 현황(2020.12)

울산광역시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현황

자치법규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852호	2018.5.17	2018.5.17.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943호	2019.4.25	2019.4.25.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498호	2014.12.31.	2015.2.2.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2122호	2020.4.1.	2020.4.1.	총무과
울산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1847호	2018.5.17.	2018.5.17.	중소벤처기업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에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234호	2020.9.24.	2020.9.24.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 조례	제1812호	2017.12.28.	2017.12.28.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59호	2018.12.27.	2018.12.27.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140호	2020.4.9	2020.4.9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제1911호	2018.12.27.	2019.1.1.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1312호	2012.11.15.	2012.11.15.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652호	2016.11.3.	2016.11.3.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2244호	2020.10.29.	2021.1.1.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93호	2018.12.6.	2018.12.6.	장애인복지과

자료: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IV.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도출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5년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와 과제가 담긴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구성 체계는 24개 추진 과제, 77개 세부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 기간 2021년 ~ 2025년 5개년 간
- 구성 체계
 - 비전, 4개 정책목표, 시정목표와 인권정책과의 연계 실행
 - 24개 추진 과제 및 77개 세부 과제 (신규12개, 확대사업65개)
- 정책 목표와 핵심 방향
 - 생활 속 인권 보장
 -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
 - 차이 존중의 인권 문화 확산
 -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제도 마련
- 시정 방향과 조화되는 연계 사업 도출
 - 모든 시민이 주인이며 인권을 매개로 서로 어울림을 전제로 하는 사업 발굴
 - 전체 시정 방향과 서로 조화되는 내용의 사업 도출
 - 인권 친화적 도시 구축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인권가치 확산 제도 정착화를 위한 추진 사업 선정
-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 도출 과정
 - 전문가 자문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 울산광역시 해당 부서 의견에서 필요하다고 거론된 사업
 - 공청회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확대가 필요한 사업
 - 인권 추진과정 제도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 인권가치 확산, 제도 정착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V.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현황 및 체계진단을 통해 두 가지 정책 및 주요쟁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주로 보호형태의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보호작업장과 같은 재활시설도 치료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며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형태도 데이터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인권의 전제로서 '자립'이 우선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바로 자립생활을 보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실제 자립 형태라고 하는 내용이 보호와 섞여서 용어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주요 쟁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을 구성하였다.

-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은 무엇보다 자립이 가장 먼저 바탕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은 여러 유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위시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회참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환경 여건을 가장 먼저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인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 자체가 모두 인권에 관한 것으로 이들의 영역은 어떤 다른 대상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인권 내지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체계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립생활보장을 위해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필요하고 수어통역을 위한 사항은 기본적인 인권사항에 포함할 내용임
- 장애인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은 조사 자체도 어렵고 실제로 구축된 통계도 필요하며 특히 학대 피해 등과 같은 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대상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는 가장 기반이 되는 자립생활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인권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사회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이러한 주요쟁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구성이 되고 예산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VI.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로드맵에 따른 사업 예산

연차별 사업-예산 투입 및 운영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총 사업비	단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강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19,372	45,342	42,550	42,680	43,800	45,000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및 교육지원	2,600	500	510	520	530	540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로 권익향상	44,259	8,059	8,150	9,250	9,350	9,450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확대	26	5	5.1	5.2	5.3	5.4
노인 심리 상담사 배치	1,000	200	200	200	200	200
노인 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18.2	3.3	3.5	3.7	3.8	3.9
시민 사회참여 체계 구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43,650	8,222	8,468	8,722	8,984	9,254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향유기회 증대	48,791	9,357	10,521	9,354	9,635	9,92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189,143	33,740	35,423	37,180	40,300	42,500
수어통역센터 권역별 설치	2,850	570	570	570	570	570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확대	9,900	2,200	2,200	2,200	2,200	1,100
장애인 탈시설지원 강화	2,926	75	751	700	700	700
지역사회 장애아 돌봄체계 구축						
장애영유아 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4249	-	1,452	751	-	2,046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16458	3,229	3,260	3,291	3,322	3,356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구축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1,780	336	346	356	366	376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1,200	220	230	240	250	260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복지상담실 방음벽 설치		기능보강사업예산 연계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자립지원	26,758	4,944	5,122	5,330	5,562	5,800
성장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960	192	192	192	192	192

추진사업	총 사업비	단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울산시민의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	350	-	150	-	100	100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450	-	200	200	50	-
함께 걷는 울산-사람이 우선인 이동권	16102	2,700	4,172	3,326	3,152	2,752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500	2,000	500	-	-	-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확대	800	160	160	160	160	160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환경권 보장						
대기환경관리 시행 추진	386,173	76,896	97,737	101,553	109,987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4,660	932	932	932	932	93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351,040	67,429	88,362	93,376	101,873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70	54	54	54	54	54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	96.5	19.3	19.3	19.3	19.3	19.3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2,509	889	1,030	530	30	30
시민의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체계 구현	54,180	10,580	10,900	10,900	10,900	10,900
서민주거복지 지원 강화	129,252	25,752	25,800	25,850	25,900	25,950
인권인식 및 의식함양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	-	-	-	-
성평등 교육 실시	75	15	15	15	15	15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10	2	2	2	2	2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	87.5	17.5	17.5	17.5	17.5	17.5
장애인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40	-	-	40	-	-
인권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4,489	789	850	900	950	1,000
양성평등정책수립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55	-	25	-	30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1,039	178	190	212	226	233

추진사업	총 사업비	단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2,215	443	443	443	443	443
결혼이민자 자원봉사단 활성화 지원	-	-	-	-	-	-
인권거버넌스 추진	70	-	10	15	20	25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6	1.2	1.2	1.2	1.2	1.2
청소년 참여권 보장(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50	10	10	10	10	10
청소년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20	4	4	4	4	4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강화						
노인복지 대상자 확대	11,047	2,123	2,165	2,208	2,253	2,298
돌봄대상의 구체화	-	-	-	-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150	24	30	31	32	33
인권친화정책 고도화						
인권지표항목 발굴 및 조사	130	30	-	50	-	50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51,810	130,360	130,360	130,360	130,360	130,360
인권침해구제와 인권정책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운영	65	-	5	10	20	30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120	-	30	30	30	30
인권 모니터링 시행	60	-	-	20	20	20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추진	142	22	30	30	30	30
인권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	-	-	-	-	-
합 계	3,733,500	638,719	760,403	794,108	894,977	645,293

주요 쟁점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로드맵이 구성이 되며 예산(안)도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권역별 수어통역센터 설치 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를 예산을 조금 증액 하는 수준이며 이 또한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증액이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를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필요하며 21년 7월에 보고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처럼 세부분야별로 욕구가 파악이 되고 현실에 맞는 세부 계획들을 통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VII. 2021년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장애인인권보장 계획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안에서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8개로 구분을 하였으며, 그 외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별도 표로 정리하였다.

울산광역시 2021년 본예산 중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¹²⁾

단위: 천원

부문	내용	금액(천원)		비율(%)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단기·공동생활 시설	22,936,526	22,936,526	17.90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체육관, 주간보호 등 각종 센터 등) 운영	16,567,990	16,567,990	12.93
생계	장애아동양육지원	1,170,273	26,616,408	20.79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지급	25,446,135		
직업재활 및 일자리(근로)	직업재활시설 및 생상품판매시설 복지·발달장애인 일자리 등	15,789,740	15,789,740	12.32
인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36,427	556,427	0.43
	학대피해장애인쉼터	220,000		
자립	자립지원센터	776,539	35,427,189	27.66
	장애인활동지원	33,755,574		
	보조기기센터 및 편의시설지원	833,076		
	농어촌 주택개조	19,00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43,000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바우처, 방과 후, 발달센터, 평생교육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등)지원	6,754,039	6,754,039	5.27
단체/ 기타	장애인 단체 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포함)	1,754,036	3,429,801	2.70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737,567		
	장애인전용 목욕탕 및 기타행정 운영 경비 등	938,198		
합 계		128,078,120		100

12) 사업비 예산 즉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경우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발달장애 부문에 포함 시켰으며,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단체지원으로 분류,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은 자립으로 포함 시켜 비교 하였다. 또한 장애인전용 목욕탕 단체 및 기타로 분류하여 실제 단체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및 타 과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등은 고려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울산광역시 2021년 본예산 중 장애인복지과 제외 장애인복지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¹³⁾

단위: 천원

담당관/과	내 용	금액(천원)		비율(%) ¹⁴⁾
법무통계 담당관	권익구제 확대 (장애관련 진료기록 감정료)	21,600	21,600	1.39%
정보화 담당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99,614	244,262	3.36%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84,648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실태조사	60,000		
체육지원과	장애인체육활동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전국체전 참가 체육회 운영 등)	2,513,483	4,438,486	6.76%
	장애인전국대회유치	245,000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	276,000		
	장애인어울림 체육대회	59,0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01,483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43,520		
복지인구 정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4,000	179,959	0.02
	장애아동 보육료지원	90,000		
	입양장애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지원	41,359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	14,600		
여성가족청소년 과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40,000	1,388,186	2.78
	성폭력피해자지원 (해바리가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1,348,186		
시민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757,700	3,146,704	7.95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45,22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861,284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282,500		
교통기획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52,841	7,840,439	11.66
	장애인콜센터 운영	1,374,056		
	장애인콜택시 운영	5,931,542		
	노후장애인 콜택시 교체	282,000		
버스타็กซี่과	시내버스 정류소 저상버스 휠체어 대기장 조성	5,000	5,000	0.006
합 계		17,264,636		-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	128,078,120	128,078,120	100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사업		145,342,756		3.57%
울산광역시 2021년 예산		4,066,117,500		

13) 명칭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애인 복지사업 제외

14) 해당 담당관/과 예산의 장애관련 투입 예산 비율

Ⅷ.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2021년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 비교

첫째, 울산광역시 2021년 본예산 중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권 즉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예산이 0.43%에 불과하다. 모든 사업에 장애인 인권이 최우선 적용되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규모 역시 권익옹호기관과 쉼터에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기관의 수 및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구축을 위해 기관만 설치를 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적절한 지원을 뒷받침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소장포함 4명의 종사자가 피해 장애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일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 특성상 거주시설에 포함이 되고 주야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한명의 종사자가 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두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아동을 분리할 곳이 없어 아동까지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종사자의 피로도 및 소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관련 법등에 의해 설치가 되었지만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성폭력피해쉼터 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등 별도 설치를 통해 학대유형, 연령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지원 강화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 탈시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이에 울산광역시도 장애인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해 5년간 2,92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립생활 욕구조사,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정착 기본계획수립, 탈시설 장애인전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7개소 이용자 720명 중 19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화지원에 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탈시설화 정책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넓어져야 하며 가족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마음과 서비스 유연화로 가족이 온전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을 당사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주간활동서비스, 증중주간보호센터 등)가 좀 더 촘촘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24시간 활동서비스 체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확대 반영한 탈시설지원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탈시설지원에 관한 예산편성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예산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울산광역시에 맞는 탈시설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시설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이다. 최근 울산은 A보호작업장의 신체·정서적 학대 사건, B장애인교육시설장의 성 학대 사건 등 장애인학대에 있어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하여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등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23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좀 더 민감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매년 또는 수시로 보다 더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넷째, 건강한 직업생활 지원강화이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단순한 생계수단이라는 의미 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아실현의 의미를 포함한다(박세나 2017). 16곳의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장애인은 극히 일부이며, 직업의 노무도 단순화되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 일반, 시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복지예산 중 약 13%에 해당이 되지만 장기근속에는 어려움이 있어 1년에서 2년 정도 근로활동을 오래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지만 그만큼의 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장기근속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기반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IX. 나가면서

최근지역 신문기사에 의하면 2022년 울산시 당초 예산 중 35.7%에 달하는 1조 5337억원을 복지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 울산시가 편성했던 31.7%를 차지했던 당초 예산안보다 2429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복지 사업 상당수가 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 분야가 시의 예산운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상일보 제9263호 / 21.11.12). 즉 보건·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배정해야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사업에 예산을 투입 비율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여 인권 및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빠르게 변화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인권친화적인 계획을 통해 올바르게 예산편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해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복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밀반찬 배달사업과 밀반찬을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중 어느 것이 만족도가 더 높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반찬을 가져다주는 배달사업이 더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정해진 반찬이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인지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니 먹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더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며 인권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복지예산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며, 투입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에 관한 예산 반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가정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증가하고,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이 지역사회통합을 두려워하며, 이용시설 안에서 도전적행동 중재라는 명목으로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접근과 전문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 도전적행동중재 전문인력 부족, 행동중재 컨설팅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장애인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행동중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20년부터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외부자원연계를 통해 컨소시엄 사업으로 도전적행동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내 필요성이 및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외부자원의 한계로 인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우수한 사례를 통해 공공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 지원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인권 친화적인 접근으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예산편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제를 접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의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각 복지 제공기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정책예산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조경진,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14

박세나,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지방안 연구, 2017

김주연,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137~138면

김경태,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0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성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소고:대구시 중구의 노인, 장애인 인권계획을 중심으로, 인권이론과 실천 제 3권, 2016.

2021-2025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 2021년 예산(안) 일반·기타특별회계

토론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

_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장애인 인권 보장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조 한 진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세 분 발제자는 각각 부산, 울산, 경남의 인권 기본계획과 장애인복지 예산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제언을 하였다. 본 토론자로서는 세 분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나, 다음의 한 가지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언급을 함으로써 토론을 시작할까 한다.

두 분 발제자는 부산과 경남의 장애 인권 보장 관련 예산에 있어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과제와 사업명을 구분하였는데,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을 ‘생명 및 생존권’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및 인력 지원’을 ‘주거권’에 분류한 것과 부산에서 ‘시설 운영 자립홈 지원’을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에 분류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하는 것을 주거와 자립에서의 하나의 권리로 보았고, 그 배경에는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문제시하는 배경이 있는 것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인력 지원’을 ‘주거권’에, 부산에서 ‘시설 운영 자립홈 지원’을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에 분류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밖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도 ‘노동권’에 분류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요양보호사 중 누구의 노동권을 말하는지 사업명만 보아서는 구분이 안 된다. 또한 ‘장애인 운전 지원사업’도 ‘이동권’이 아니라 왜 ‘여가생활 및 문화, 체육 참여권’으로 구분되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외에 본 토론자의 주 임무는 세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종합하고 이에 따른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바, 이하에서는 세 시도의 현황을 뭉뚱그려 논할까 한다.

첫째, 부산시는 본청이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를 가지고 있고 16개 행정구역 중 9개 구(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7개 구·군(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5개 행정구역 중 4개 구·군(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이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동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은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 내 장애 인권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주기조차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만 있고 시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규정하지 않은 시·군이 다수”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8개 시·군(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중앙 차원에서의 법률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시의 경우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발간한 ‘부산시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안)’이 있으나 올해 수립했어야 할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경남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초에나 공개될 예정인 등, 결국 세 시도 모두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본 토론자가 논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인권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처지에서는 성이 차지 않는 노릇이라면, 세 시도 모두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하루바삐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100가지 정책과제 중 장애인 분야는 총 10가지가 제시되었으나, 발제자에 의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별다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2022년 예산 지원이 없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과제 중에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가 있으나, 장애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외에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도 2021년에는 11월 기준으로 아직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 특히, 10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 ‘거주시설 장애인 등 탈시설 자립 지원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립형 체험홈을 매년 10개소씩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홈이 평가에 대비하여 실적 위주로 운영될 때 또 다른 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운영하는 체험홈을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나갈 때 “시설 거주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 갈 곳이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단계적이거나 체험홈을 계속 설치·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이렇게 체험홈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발상을 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경우에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총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장애 관련 과제인데, 그 중 ‘수어통역센터 권역별 설치’, ‘장애 영유아 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장애인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는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는 13개 과제 모두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라는 것이며, 예산도 약간 증액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남은 ‘장애인 인권정책 체계 수립’이라는 중점전략 하에 추진과제(10대 핵심과제이기도 함)로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소요 예산 6천만 원)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라는 중점전략 하에 ‘학대 및 폭력 피해 보호 시설 설치’라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학대 피해 장애 여성 아동쉼터 운영’(소요 예산 5년 동안 매년 303백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학대 피해 장애 여성 아동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피해 장애인 쉼터’를 작년 10월에 개소하였다.

결국, 세 시도 모두 인권 기본계획이나 연차별 추진계획에 별다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2022년 예산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다. 더구나 부산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분야가 100가지 정책 과제 중 10가지, 울산의 경우에 총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 심지어 경남은 60개 세부 사업 중 딱 2개 사업이다. 이에 장애인과 관련하여 계속 사업뿐 아니라 독창적인 신규 사업을 인권 기본계획에 더 많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의 시행에 따른 평가를 하고 이를 다시 계획의 수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의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발전되고 있고, 따라서 인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시도의 장애 관련 예산을 인권 측면에서 그 우선 순위를 보고자 한다면, 광의로 장애인복지사업이라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의 사업보다는 자유권 영역에 속한 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은 부산이 0.02%, 경남이 0.03%, ‘인권 침해 대응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부산이 4개 사업에 0.09%, 울산이 장애인복지과 2개 사업에 0.43%, 여성가족청소년과 2개 사업에 2.78%, 경남이 6개 사업에 0.30%에 불과하고, 그나마 안전권 및 참정권과 관련한 예산은 전무하다. 이는 세 시도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 적어도 자유권 영역 사업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산, 울산, 경남의 인권 보장 실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듯하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세 시도의 장애 인권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관계자분들의 분발을 감히 촉구하는 바이다.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 개선방안 등 정책토론회

| 인 쇄 | 2021년 12월 1일
| 발 행 | 2021년 12월 1일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대성프린텍
| 전 화 | (051) 807-2373 | F A X | (051) 803-4114

ISBN 978-89-6114-842-9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